

# 현 의료서비스 어디까지?



환자도 소비자이다.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곳이며, 아픈 곳을 치료해준다는 이유일까? 현 의료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업에 비하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 물론 요사이 많은 병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마련코자 노력하고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소비자인 환자가 중심이 되기엔 너무나 멀리 있다.

앞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그에 대한 작은 방편으로 불합리한 의료서비스와 구제현황을 알아보았다.

## 복부지방흡입 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박모 씨(42세)는 대학병원 성형외과를 방문해 상담한 후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다.

수술 받은 지 1년이 경과했는데도 배꼽 주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고 상복부는 울퉁불퉁한 비만 상태 그대로였다. 의사는 1년~1년 6개월이 지나면 호전된다고 기다려 보라고 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아 재수술 받아야 하는 상태다.

환자측에서는 수술 당시 의사가 과거 제왕절개술을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술 전에 전혀 설명이 없었으며 수술 후에 원래 방법과 다르게 수술했다는 설명을 했고 지방흡입 수

술 후 피부가 울퉁불퉁한 것은 의사가 수술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처리 결과는 이렇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전 사전설명이 미흡했고 수술 2년 후에 촬영한 사진자료를 확인할 때 상복부 표면이 심하게 울퉁불퉁한 것이 육안으로도 확인돼 수술 후 부작용 발생은 의사의 시술상의 문제로 지적됐다.

의료사고의 법적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의료행위가 시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다(민법 제 766조 1항·2항). 환자가 사고를 인지한 것은 3년 이내였고 병원측에서

수술비 일부를 환불해주었다.

### 병원 주사실 침대에서 유아 추락해 앞니 부러져

서모씨(35세)는 두 딸(3세, 6세)과 함께 이비인후과를 방문했다. 먼저 두 딸을 치료 받게 한 후 서씨가 진찰을 받게 되었다. 서씨가 진찰을 받는 동안 간호사는 3세의 여아에게 처방된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 주사실로 데리고 갔다. 간호사가 여아를 침대에 두고 주사기를 가지러 간 사이, 침대에 앉혀둔 여아가 바닥으로 떨어져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손상된 유치에 대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구치 손상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 처리 결과는 이렇었다

간호사는 지속적으로 환자를 관리·감시할 의무가 있다. 더구나 환자가 유아인 경우는 더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인정돼 유치 치료에 소요된 경비일체를 배상 조치했다. 외상으로 유치가 일찍 손상되면 영구치가 나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 영구치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치료비 일체도 배상키로 조정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환자관리 책임이 의료진에 있기는 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지는 유아나 소아의 경우는 반드시 모든 진료과정에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유아나 소아는 당시의 외상으로 인해 성장과정에 또다른 후유증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전문가를 통해 이를 확인한 후 병원측과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치료 받으러 가다가 계단에서 추락

평소 허리통증으로 고통을 겪었던 원모씨(35세)는 인근 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진찰을 받았다. 의사 지시하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지하에 있는 물리치료실로 내려가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지하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천추골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 내 시설물인 계단의 하자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하며 치료비 전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 처리 결과는 이렇었다

사실조사 결과, 물리치료실로 내려가는 계단이 매우 가파르는데다 발을 딛는 계단의 폭이 일정치 않음이 확인됐다. 심하게는 계단의 폭이 8cm가량 차이가 나 안전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돼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배상 조치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병원 내 바닥이나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보통 병원측에서는 환자 부주의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동일 장소에서 유사한 선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물 관리상 하자가 무엇인가를 꼼꼼히 따져본 후, 이상이 발견되면 사진으로 남겨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